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7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윤준병 · 송옥주 · 임미애
허영 · 안도걸 · 한병도
이춘석 · 안호영 · 박희승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청소년, 임산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을 말한다.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분을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하게 하거나 그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능성 농산물 및 그 표시에 관한 사항

제2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용기·포장에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그 기능성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 또는 광고된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3.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
4.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
5.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열람·복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기능성 표시를 한 농산물이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 또는 광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조사

제11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자

제120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2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 지 않은 사람(청소년, 임산 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 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 을 말한다.
<u><신 설></u>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 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 분을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 유하게 하거나 그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회회의 직무) ----- -----.

1. ~ 10. (생략)

<신설>

11. · 12. (생략)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능성 농산물 및 그 표시에 관한 사항

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5조의3(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용기·포장에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는 그 기능성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 또는 광고된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농산물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2.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의 실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의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
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
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
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기능성 농산물의 사후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
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
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
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3.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

4.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

5.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열람·
복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
는 제13조제2항,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기
능성 표시를 한 농산물이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표시 또는 광
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신설>

2. ~ 9. (생략)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조사

제119조(벌칙)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9조제1항제3호를 기능성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기능성 농산물로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자

2. ~ 9. (현행과 같음)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1.</u> (생 략) <u><신 설></u> <u>2. ~ 9.</u> (생 략) <u>9의2.</u> (생 략) <u>10. ~ 13.</u> (생 략)	제120조(벌칙) ----- ----- ----- -----. <u>1.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2. (현행 제1호와 같음)</u> <u>3.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u>4. ~ 11.</u>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u>12.</u>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u>13. ~ 16.</u>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